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8780(본소), 2018가단8797(반소) 판결
[대여금청구 · 매매대금]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313808(본소), 2019나313815(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878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박영익

변론 종결 2019. 5. 29.

판결 선고 2019. 7.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소외회사의 총 발행주식 57,000주 중 80%인 45,6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4. 4.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소외 회사에 10회에 걸쳐 총 5억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D'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주유소에서 2017. 1.경부터 6. 말경까지 소외 회사에 공급한 유류대금이 약 4,580여만 원 가량 있었다.

라. 2016. 10. 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소외 회사 주식 17,100주(총 발행주식수의 30%)를 1억 7,1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를 기초로 그 무렵 원고 앞으로

17,100주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2018. 4. 15.경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16억3,500만 원에 양도하되, 매매대금 중 10억 6,500만 원은 E이 소외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을 갈음하고, 원고의 주식도 E이 승계한다고 정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8. 4.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 4,580여만 원과 대여금 5억4,000만 원 중 소외 회사 주식으로 변제받은 1억 7,100만 원을 뺀 3억 6,900만 원 합계 4억 1,48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사. E은 2018. 5. 10.경 원고와 사이에, E이 원고에게 주식 대금 1억 7,100만 원과 회사의 대여금 409,000,000원을 인정하여 합계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지급이 완료되면 원고는 E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는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소외 회사에 5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 주식 17,100주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의 담보 내지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17,100주를 6억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주식매매대금의 일부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적어도 계약서 상 주식매매대금인 1억 7,100만 원에서 기지급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4.경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주식매매대금인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소외 회사주식 17,100주는 소외 회사 채무에 대한 담보 내지 대물변제를 위해 수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2016. 4. 4.경인데, 그 무렵 주식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일이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2016. 10. 1.경에 이르러서인데, 그 시점에는 이미 원고가 소외 회사에 5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이다(원고가 2016. 10. 5.경 소외 회사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총 대여금은 5억 4,000만 원이다). 이는 2016. 4.경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서만 뒤늦게 작성하였다기보다는, 소외 회사가 5억 이상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그에 대한 담보나 대물변제를 위해 주식을 이전하고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경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명의개서까지 마쳐주었다. 피고 주장대로라면 6억 원 또는 1억 7,100만 원인 주식매매대금 중 2,000만원만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명의개서를 마쳐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 시점에 명의개서를 하였어야 할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진 후인 2018. 9. 18.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흔적이 전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주식매매대금 잔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약 2년 이상 대금 지급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소외 회사에 5억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와 별도로 피고의 주식을 6억 원이나 주고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 회사의 가치(피고가 E에게 전체 주식을 매도하고 부채 승계로 갈음한 부분을 빼고 실제로 받은 대가는 약 4억 5,000만 원

정도이다)를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이다.

⑤ 피고가 E에게 주식을 매도할 때, 원고가 보유한 주식으로 인해 최초 제시금액인 23억 원에서 크게 가격이 내려간 16억 3,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주식을 돌려받아 E에게 일괄매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큰 이익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⑥ 피고와 E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은 매매대상을 소외 회사 주식 100%로 하고, 원고의 주식은 E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매도해버린 것이라면 E이 이를 승계할 여지가 없고, 매매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라면 E이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E은 원고와 사이에 주식매매대금과 소외 회사의 채무 합계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찾아오기로 하는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주식이 소외 회사 채무에 대한 담보라는 전제에 서, E이 소외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하고 주식을 되찾아 전체 100%의 주식 취득을 완성하기로 하는 거래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